

“ 함께하는 한국체육의 중심, 세계 하키의 리더!! ”



(사) 대한하키협회

수신자 소속단체장
(경유) 하키부지도자
제 목 제37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변경사항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대한하키협회-58(2018.03.30.)
3. 우리 협회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제37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는바 참가를 희망하는 팀(대학, 일반부)은 변경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팀 운영 및 대회 참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대회규정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토너먼트로 실시하며, 일반부 5팀까지는 풀리그, 6팀부터는 조별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로 한다. |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 ①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통합)로 구분하며 시상은 대학부, 일반부를 분리한다. ② 중등부, 고등부는 토너먼트로 한다. ③ 대학일반부는 리그전으로 하며, 6팀까지는 풀리그, 7팀부터는 조별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로 한다. ④ 대학일반부 경기세부사항은 참가신청 마감 후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

붙임: 대회규정 변경 후 1부. 끝.

(사) 대한하키협회

수신처 한국체대, 대구과학대, 경희대, 인제대, 제주국제대, 조선대, 순천향대, 부산대학교, 남대, 인천시체육회,
경북체육회, 평택시청, 아산시청, 목포시청, (주)KT, 성남시청, 김해시청, 국군체육부대

★담당 이준웅 사무처장 박신흠 회장직무대행 신정희

시행 대한하키협회 - 63 호 (2018. 4. 05.) 접수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테니스장3층301호 / <http://koreahockey.co.kr>
전화 02)420-4267~9 / 전송 02)420-4138 / korea-hockey@naver.com / 공개

대회규정

- 제1조 본 대회는 제37회 협회장기 전국남여하키대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대회는 (사)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
- 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 대회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 제4조 본 대회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하키협회 2018년도 선수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 팀 이어야한다.
 2. 지도자(감독,코치,트레이너) 및 선수는 한 팀에만 등록하고 참가신청 할 수 있다.
-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
- ①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통합)로 구분하며 시상은 대학부, 일반부를 분리한다.
 - ② 중등부, 고등부는 토너먼트로 한다.
 - ③ 대학일반부는 리그전으로 하며, 6팀까지는 풀리그, 7팀부터는 조별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로 한다.
 - ④ 대학일반부 경기세부사항은 참가신청 마감 후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 제6조 본 대회 경기시간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60분(15분*4쿼터)으로 한다.
1.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페널티 슛-아웃(Shoot-out) 5회를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2.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운영본부 경기감독관(저지 등)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3. 일반부 리그전 경기는 승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으로 채점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1)골득실차 (2)다득점 (3)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3가지가 같을 경우 페널티 슛-아웃(Shoot-out)을 실시한다.
- 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경기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
(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 득점차가 발생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
- 제8조 본 대회 경기도중 일을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갖되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시간의 경기만,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페널티 슛아웃도 잔여경기 시간에 속한다)
- 제9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 제10조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
(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
1. 경기도중 짐단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여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몰수게임으로 처리 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2. 대회기간 중 엘로카드를 3회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4.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와 일시퇴장(엘로카드 3회), 완전퇴장(레드카드) 선수는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
 5. 본 대회의 관련된 각종 이의신청(부정선수, 심판판정, 경기장 질서문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단장.부장.감독 명의로)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에, 사안은 대회위원회(T.D, T.O, U.D)에서 결정한다. 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6. 팀 벤치에 감독, 코치가 특별한 사유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경기 중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7. 상기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경기중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 제11조 본 대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팀은 대한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2조 본 대회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관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
- 제13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추가 결정한다.